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동물병원 안내사항



동물병원을 포함한 제약사, 병의원에서의 마약류 유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다.

지난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마약류 의약품의 구입, 보관, 사용에 관한 기록의무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산화되는 것.

이에 따라 기존 마약류 관리대장, 마약구입서 등의 보관의무가 없어지는 대신 마약류의 취급내역 전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기록함으로써 상시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은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2016년 11월 인체용 마약(모르핀, 코데인 등)을 시작으로 2017년 인체용 향정신성의약품(프로포폴, 졸피뎀 등)을 거쳐 2018년 5월 동물용 마약과 향정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가 포함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해당하는 동물병원도 현재 사용 중인 마약류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당장 인체용 마약을 사용 중인 동물병원은 올해 11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참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5년 판매기록을 기준으로 인체용 마약을 사용 중인 동물병원은 전국 34개소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제조부터 유통,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산으로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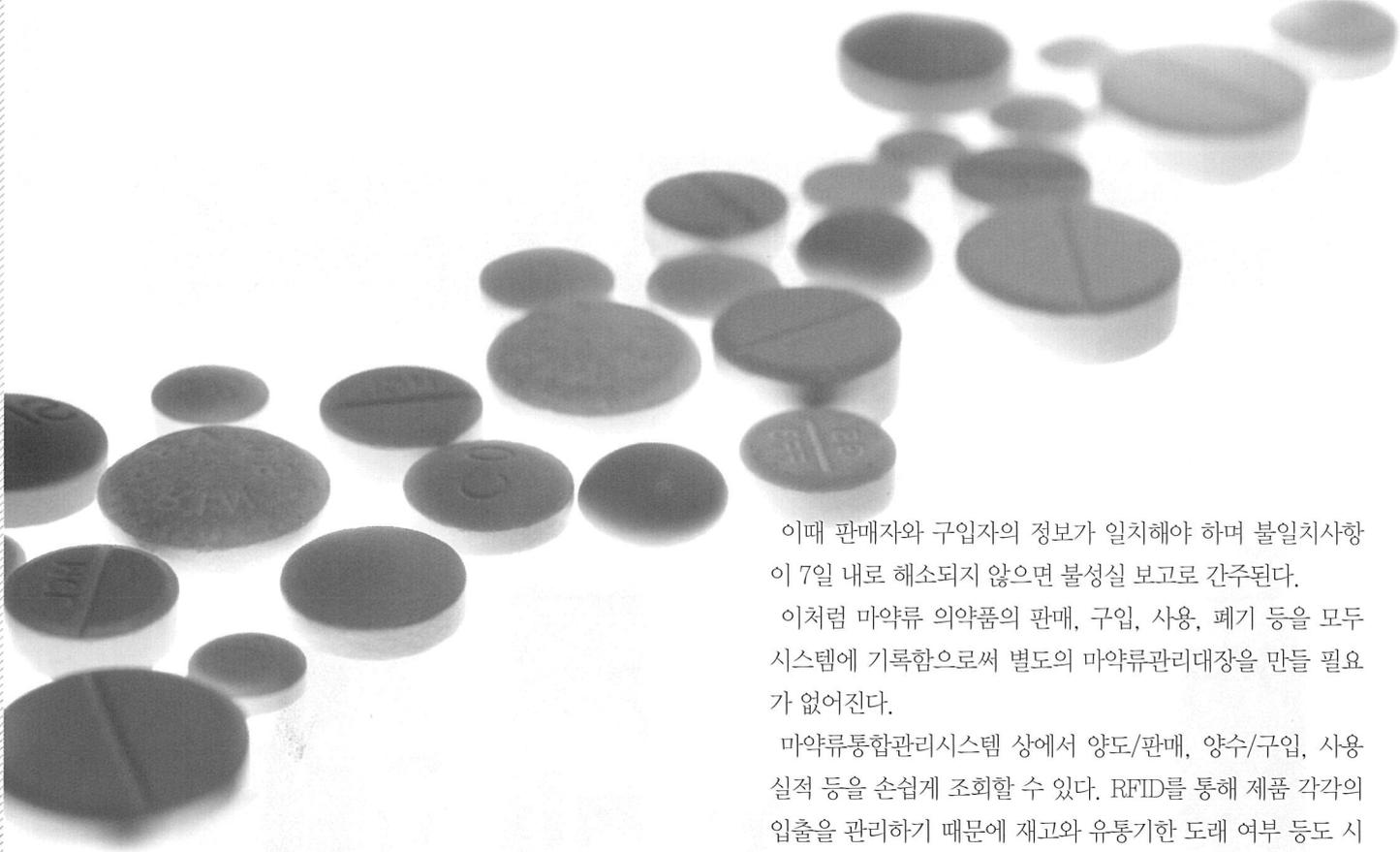
마약류 의약품 제품 각각의 포장에 RFID 정보를 담고, 이를 일선 병의원과 동물병원, 약국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된 RFID 리더기로 읽어들이으로써 시스템 상 기록과 실제 제품유통상황이 일치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마약류의 불법유통 및 오남용을 방지하고 도매상이나 일선 병원의 기록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동물병원에서는 마약류를 구매, 보관, 사용, 양도, 폐기할 때마다 기록을 남기거나 관할 보건소의 승인(양도, 폐기 시)을 얻어야 하는 점은 기존과 같다. 다만 서류로 작성하던 기록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하면 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변화

동물병원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교부할 경우, 기존에는 마약류관리대장을 2년간 보관해야 했다. 하지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러한 보관의무는 없어진다. 대신 사용할 때마다 그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해 상시 보고해야 한다.



내역에는 투약한 동물의 종류와 질병명,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방한 수의사의 성명과 동물병원명, 면허번호가 포함된다. 실제로 사용한 마약류 제품을 RFID 리더기로 리딩하여 특정시킨 후 그 소진량을 기록해야 한다.

마약류 제품이 상실, 분실, 도난, 변질, 부패, 파손되어 발생한 '사고마약류'의 처리도 보다 간편해진다.

당초 관할 관청에 사고마약류발생보고서와 폐기신청서를 따로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전산으로 보고하고 관할 담당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마약류 의약품의 입고기록은 보다 철저해진다. 마약류를 판매한 업체(도매상 등)가 거래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제품을 받은 동물병원이 해당 내역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RFID를 통해 제품 각각이 전산 등록된다.

이때 판매자와 구입자의 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사항이 7일 내로 해소되지 않으면 불성실 보고로 간주된다.

이처럼 마약류 의약품의 판매, 구입, 사용, 폐기 등을 모두 시스템에 기록함으로써 별도의 마약류관리대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에서 양도/판매, 양수/구입, 사용 실적 등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RFID를 통해 제품 각각의 입출을 관리하기 때문에 재고와 유통기한 도래 여부 등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병원 대응 사항

인체용 마약을 사용하고 있는 동물병원은 당장 올해 11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준비를 마쳐야 한다.

동물병원 수의사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www.nims.or.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관할 행정기관의 사용승인을 얻은 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 043-719-28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포폴 등 인체용 향정신성의약품 사용하고 있는 동물병원은 내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의무자로 포함되며, 동물용 마약류(마약, 향정)만 사용하는 동물병원은 2018년 사용 의무화가 될 예정이다. ▼

